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92호 2023. 10. 13.(금)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729호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730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고창군 조례	제2731호	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12
○ 고창군 조례	제2732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고창군 조례	제273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고창군 조례	제2734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고창군 조례	제2735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 개정조례	35
○ 고창군 조례	제2736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37
○ 고창군 조례	제2737호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39
○ 고창군 조례	제2738호	고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9
○ 고창군 조례	제2739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고창군 조례	제2740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59
○ 고창군 조례	제2741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고창군 조례	제2742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82
○ 고창군 조례	제2743호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 고창군 조례	제2744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 고창군 조례	제2745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97

회 람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227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9
- 고창군 규칙 제1228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6
- 고창군 규칙 제1229호 고창군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10
- 고창군의회 규칙 제1224호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6
- 고창군의회 규칙 제1225호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1
- 고창군의회 규칙 제1226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9

【훈 령】

- 고창군의회 훈령 제6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의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2

【예 규】

- 고창군 예규 제15호 고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64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3-148호 성송면 내원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78
- 고창군 고시 제2023-149호 아산면 마명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81
- 고창군 고시 제2023-150호 신림면 신기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84
- 고창군 고시 제2023-151호 무장면 조치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87
- 고창군 고시 제2023-152호 경지정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190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824호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91
- 고창군 공고 제2023-1836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98
- 고창군 공고 제2023-1850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5
- 고창군 공고 제2023-1870호 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210
- 고창군 공고 제2023-1888호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7

【회 보】

- 2021 종합민원실 신축신고-78 (2023.10.5.) (신림면 김형심)도로지정 227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29 호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이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5년마다 기본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고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시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 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 확정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행정계획의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발전지표”라고 한다)를 개발·보완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성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고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 4.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 5.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8. 다른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9.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재직위원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 및 부서장
-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4.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0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p> <p>①·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 다.</p> <p>1. (생 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p> <p>가. ~ 마. (생 략)</p> <p>바. <u>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p> <p>사.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바. (현행 사목과 같음)</p> <p><u>④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1 호

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빈집”이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군수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2.“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자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4.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④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비지원 우선순위) 군수는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고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5.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9. 65세 이상인 사람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제1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공사 사진(전·중·후)
3.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2 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 이상으로”를 “6명 이내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변경 또는 조정”을 “변경 및 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u>에 따라 고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u>----- ----- -----.</p>
<p>제2조(구성) ① 고창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7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u>3명 이상으로</u> 한다.</p> <p>1. ~ 3.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u>10명</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6명 이내로</u>----- -. 1.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u>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u></p> <p>2. <u>고창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u></p> <p>3. <u>고창군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 제정 및 변경(단, 다른 법령에 제정 절차 및 방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제3조(기능) ----- -----. 1. ----- <u>변경 및 폐지</u> <삭 제> <삭 제></p>

4. (생략)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
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
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삭 제>

제9조 · 제10조 (현행 제10조 및 제1
1조와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3 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고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7조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4.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 부서장은 휴가 실시 후 5일 이내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은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고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u>----- ----- ----- -.</p>																		
<p>제2조(복무선서) ① <u>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2조(복무선서) ① <u>고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휴가의 종류) <u>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u></p>	<p>제17조(휴가의 종류) ----- ----- <u>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u></p>																		
<p>제18조(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이상 6월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일</td> </tr> <tr> <td>6개월이상 1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일</td> </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9일</td> </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일</td> </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일</td> </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7일</td> </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일</td> </tr> <tr> <td>6년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1일</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이상 6월미만	3일	6개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p>제18조(연가일수) <삭제></p>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이상 6월미만	3일																		
6개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제>

<삭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삭 제>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삭 제>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 제>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⑧ 삭 제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
-----.

<삭 제>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생략)

⑪ 소속기관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 (생략)

3. 재직기간별 잔여휴가일수는 소급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⑫·⑬ (생략)

<신 설>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4.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 부서장은 휴가 실시 후 5일 이내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은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⑫·⑬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생 략)

[별 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을 준용한다.

제2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별 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4 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노을대교, 인구정책,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을
“노을대교,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① ~ ③ (생 략)</p> <p>④ 신활력경제정책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u>노을대교, 인구정책,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u></p> <p>2. ~ 7. (생 략)</p> <p>⑤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u>노을대교,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u></p> <p>2. ~ 7.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인구정책에 관한 사항</u></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5 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신활력경제정책관, 건설도시과장,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도시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전입세대지원)”을“(전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구늘리기 시책”을 “인구시책”으로, “신규 전입하는 전입자”를 “전입하는 전입자와 우수기관 및 기업체, 유공 개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입 지원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세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 <u>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신활력경제정책관, 건설도시과장,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이 된다.</u></p> <p>④ ~ ⑦ (생 략)</p> <p>제17조(<u>전입세대지원</u>) <u>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고창군에 신규 전입하는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도시과장, 보건소장</u>-----</p> <p>-.</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17조(<u>전입지원</u>) ① ----- <u>인구시책----- 전입하는 전입자와 우수기관 및 기업체, 유공 개인 등</u>-----.</p> <p>② <u>전입 지원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세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6 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체험홈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주거 공간 지원

나.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기회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4조 (업무 및 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 체험홈 시설에 관한 사항</p> <p>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주거 공간 지원</p> <p>나.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기회 제공</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7 호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창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고창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7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

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립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5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등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 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8 호

고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창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고창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기본계획(이하“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군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고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고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 안전, 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3. 환경, 화학, 보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지역화학사고 대비 대응

제1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 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중점보호시설 현황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
3. 화학사고 누출 사고대응 절차
4.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체계
5. 화학사고 발생시 군민 대피에 관한 사항
6. 긴급구호물질 지급 및 응급 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항

③ 군수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성·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제4장 화학사고 발생 시 군민고지 및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화학물질 관리계획
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4.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5. 제17조에 따라 고창군에서 수립한 화학사고대응계획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5장 보 칙

- 제19조(안전관리교육 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주민들에게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환경·안전교육·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 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39 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 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40 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계시대에 고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 이어야 한다. 단, 고창읍은 5배 이내로 한다.
3.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계시대에 고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u> <u>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구안의 읍·면수의 2배 이내 이어야 한다. 단, 고창읍은 5배 이내로 한다.</u> <u>3.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u>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41 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2호다목 중 “비닐하우스”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로, “육상 어류양식장을”을 “양식장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를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 이하”를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1호 내지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때, 도로 연장은 도로연결 시점부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부지까지 연결되는 실제 도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제57조제1항제16호 단서, 같은 항 제18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9호 단서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을 각각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9호 단서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별표17]제2호거목 중 “제2호”를 “제29호”로 한다.

[별표18]제2호더목 중 “제2호”를 “제29호”로 한다.

[별표 26] 중 제1호부터 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부기준

제한기준	제한대상	입지기준(이격거리 ¹⁾ 등)
공원, 문화재, 관광지 ²⁾	발전시설 ¹¹⁾	300m
	폐차장 ¹²⁾ 및 고물상 ¹³⁾	200m
	공장 ¹⁴⁾ 및 자원순환관련시설 ¹⁵⁾	1,000m
도로 ³⁾	발전시설 ¹¹⁾	300m (농어촌도로 ⁴⁾ 200m)
	폐차장 ¹²⁾ 및 고물상 ¹³⁾	200m
	공장 ¹⁴⁾ 및 자원순환관련시설 ¹⁵⁾	1,000m
공공시설 ⁵⁾	발전시설 ¹¹⁾	300m
	폐차장 ¹²⁾ 및 고물상 ¹³⁾	500m
	공장 ¹⁴⁾ 및 자원순환관련시설 ¹⁵⁾	1,000m
주거밀집지역 ⁶⁾	발전시설 ¹¹⁾	300m
	폐차장 ¹²⁾ 및 고물상 ¹³⁾	
	공장 ¹⁴⁾ 및 자원순환관련시설 ¹⁵⁾	1,000m
공유수면 ⁷⁾	발전시설 ¹¹⁾	1,000m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⁸⁾	발전시설 ¹¹⁾	500m
우량농지 ⁹⁾	발전시설 ¹¹⁾ 중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불가
	폐차장 ¹²⁾ 및 고물상 ¹³⁾	입지불가
	공장 ¹⁴⁾ 및 자원순환관련시설 ¹⁵⁾	입지불가
중점경관관리구역 ¹⁰⁾	발전시설 ¹¹⁾	입지불가

2. 예외기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¹⁶⁾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¹¹⁾을 설치하는 경우 위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¹¹⁾ 중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위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사전 협의한 사업에 한함. 이 때,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¹¹⁾(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⁷⁾ 및 창고¹⁸⁾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¹¹⁾(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우량농지⁹⁾ 및 중점경관관리구역¹⁰⁾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⁷⁾ 및 창고¹⁸⁾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¹¹⁾(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주)

- 1) 이격거리 :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이격 대상 지역 지적 경계(주택의 경우 외벽 기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 2) 공원, 문화재, 관광지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관광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관광단지를 말한다.
- 3) 도로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중 준공된 도로를 말한다.
- 4) 농어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의 도로(농도의 경우는 제외) 중 준공된 폭 5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5) 공공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중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은 제외),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 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 6) 주거밀집지역 :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으로 한다.
- 7) 공유수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를 말한다.
- 8)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의한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을 말한다.
- 9) 우량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
- 10)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
- 11)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를 말한다.
- 12)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 13) 고물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 14) 공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산업단지 구역 밖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업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폐비닐·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업 등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 15)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중 나목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육시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 16) 공공단체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으로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이 포함된다.
- 17) 농지이용시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시설 중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염소·산양 제외)을 사육하는 축사를 제외한 동·식물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18)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개별법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신고 등이 완료된 창고 및 정부관리양곡창고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u>」(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 -----.</p>
<p>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p>	<p>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p>
<p>1. (생 략) 2. 공작물의 설치 가. · 나. (생 략) 다.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u>비닐하우스</u> 안에 설치하는 <u>육상 어류양식장</u>을 제외한다)의 설치</p> <p>3. ~ 6. (생 략)</p>	<p>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u>양식산업발전법</u>」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u>비닐하우스</u>--- <u>양식장</u>은 ---- -</p> <p>3. ~ 6. (현행과 같음)</p>

제19조의2(성장관리방안의 수립)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2. (생략)
-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

1. (현행과 같음)
2. ----- 방
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성장관리계획-----
포함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 성장관리계획-----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 5. (생략)
-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 설>

<신 설>

- 1. -----
-----「주택법」 제15조-----

- 2. -----
-----「주택법」 제15조-----

- 3. ~ 5. (현행과 같음)
- 6. -----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 1. ~ 15. (생 략)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7. (생 략)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1호 내지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때, 도로 연장은 도로연결 시점부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부지까지 연결되는 실제 도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

- 1. ~ 15. (현행과 같음)
- 16. ----- . --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
- 17. (현행과 같음)
- 18. ----- . -

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② ~ ⑦ (생략)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 21.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

19. -----.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

20. · 21.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18. (현행과 같음)

19. -----.
-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

20.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⑥·⑦ (생략)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 1. (생략)
-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하.(생략)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1. (생략)
-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너.(생략)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0조의2 관련)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특정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 1. (현행과 같음)
- 2. -----

가. ~ 하.(현행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9호-----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1. (현행과 같음)
- 2. -----

가. ~ 너.(현행과 같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9호-----

[별표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0조의2 관련)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
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의 기준
은 아래와 같다.

가. 공원, 문화재, 관광지⁴⁾ 경계로
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나. 주요도로⁵⁾ 경계로부터 사업
부지 경계까지 300m

다. 농어촌도로⁶⁾ 경계로부터 사업
부지 경계까지 200m

라. 공공시설 등⁷⁾ 경계로부터 사업
부지 경계까지 300m

마. 주거밀집지역³⁾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바. 유네스코, 지질공원⁹⁾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500m

사. 공유수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닷가)으로부터 1,000m

아. 위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이격거리²⁾ 이내의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삭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 세부기준

표 <신 설>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발전 시설¹⁾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²⁾ 및 창고¹⁵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 시설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²⁾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자. 우량농지 및 중점경관관리구역¹⁶⁾ 내에 발전시설¹⁾(자가소비용은 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²⁾ 및 창고¹⁵⁾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2. 폐차장 및 고물상 이격거리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공원, 문화재, 관광지⁴⁾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2. 예외기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 시설¹¹⁾을 설치하는 경우 위 세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다. 공공시설 등⁷⁾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500m

라. 주거밀집지역³⁾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마. 우량농지⁸⁾ 내에는 폐차장 및 고물상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¹¹⁾ 중 태양광 발전 시설인 경우 위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단,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사전 협의한 사업에 한함. 이 때,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¹¹⁾(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⁶⁾ 및 창고¹⁷⁾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¹¹⁾(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우량농지⁹⁾ 및 중점경관관리구역¹⁰⁾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⁶⁾ 및 창고¹⁷⁾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¹¹⁾(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마. <삭 제>

3. 공장¹³⁾ 및 자원순환관련시설¹⁴⁾ 이격거리²⁾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공원, 문화재, 관광지⁴⁾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0m

나. 공공시설 등⁷⁾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0m

다. 주거밀집지역³⁾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0m

라. 우량농지⁸⁾ 내에는 공장¹³⁾ 및 자원순환관련시설¹⁴⁾을 설치할 수 없다.

주)

1)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를 말한다.

2) 이격거리 :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이격 대상 지역 지적 경계(주택의 경우 외벽 기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3. <삭 제>

주)

1) 이격거리 :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이격 대상 지역 지적 경계(주택의 경우 외벽 기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2) 공원, 문화재, 관광지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관광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관광단지를 말한다.

3) 도로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중 준공된 도로를 말한다.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으로 한다.

4) 공원, 문화재, 관광지 :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의 공원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관광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관광 단지를 말한다.

5) 주요 도로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군도 및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중 준공된 도로를 말한다.

6) 농어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의 도로(농도의 경우는 제외) 중 준공된 폭 5m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7) 공공시설 등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장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8) 우량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4) 농어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의 도로(농도의 경우는 제외) 중 준공된 폭 5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5) 공공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중 공원(소공원, 어린이 공원은 제외),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 :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으로 한다.

7) 공유수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를 말한다.

8)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의한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을 말한다.

9) 우량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

- 9) 유네스코, 지질공원 :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의한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 「자연공원법」 및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시된 고창군 지질명소를 말한다.
- 10)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 11) 고물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 12) 농지이용시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시설 중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염소·산양 제외)을 사육하는 축사를 제외한 동·식물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13) 공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산업단지 구역 밖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

- 10)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 계획”과 관련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 구역
- 11)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를 말한다.
- 12)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 13) 고물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 14) 공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산업단지 구역 밖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업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페비닐·페플라스틱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업 등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14)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중 나목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 시설(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육 시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5)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개별법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신고 등이 완료된 창고 및 정부관리양곡창고 제외)

16)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

혼합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업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페비닐·페플라스틱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업 등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15)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중 나목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육시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6) 공공단체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으로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이 포함된다.

17) 농지이용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시설 중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염소·산양 제외)을 사육하는 축사를 제외한 동·식물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18)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개별법에

	<p><u>따라 영업허가·등록·신고 등이 완료된 창고 및 정부관리양곡창고 제외)</u></p>
--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42 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용도의 시설”을 “용도의 시설로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제2조의4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등 제2조의2 제2항

제2호내지제5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정관
2. 조직도 및 인력배치
3. 시설 운영·관리 규정
4.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

제2조의5(관리위탁의 전대) 관리위탁 기간 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사업계획서를 전대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대 물건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및 수익기간
3. 전대자 선정방법 및 사용료

제2조의6(수탁자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2조의4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4.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고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행

정기구설치 조례」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로 한다.

제12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9조제2항”을 “영 제39조”로, “「고창군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고창군 주차장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3조제5호</u>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u>용도의 시설</u></p> <p><신설></p>	<p>제2조(공동이용시설) ----- ----- ----- <u>제3조제6호</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u></p> <p>6. ----- ----- ----- <u>용도의 시설로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p> <p><u>제2조의4(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등 제2조의2 제2항 제2호내지제5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u></p>

<신 설>

<신 설>

다.

③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조합 정관
- 2. 조직도 및 인력배치
- 3. 시설 운영·관리 규정
- 4.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

제2조의5(관리위탁의 전대) 관리위탁 기간 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사업계획서를 전대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전대 물건 표시
-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및 수익기간
- 3. 전대자 선정방법 및 사용료

제2조의6(수탁자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

제4조(주민협의체) ① (생략)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2조의4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 4.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 하는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4조(주민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

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창군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
-----.

1.·2.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39조-----

----- 「고창군 주차장 조례」-----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43 호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을 “고창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창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창군민(물리치료 포함)

별표 1의 제4호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4.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징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의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진찰·검사료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진찰비및검사료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적용 징수함
2. 일반진단서	1통	500	"
3. 특별진단서	1통	2,000	"
4.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징수
5. 사망진단서	1통	500	진찰비및검사료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적용 징수함
6. 운전면허신체 검사(1종 보통)	1통	500	"
7. 운전면허신체 검사(1종 대형)	1통	500	"
8. 증명서 재발급	1통	3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u>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u>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u><신 설></u></p> <p>10.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10조, 제13조 및 제25조,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u>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u>고창군수는</u>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고창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창군민(물리치료 포함)</u></p> <p><u>11. (현행 제10호와 같음)</u></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44 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고창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고창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 대상이 된다.

1. 입국 이후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고창군에 자녀를 출생신고
2.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제4조제1항 중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750만원, 넷째 아이 1,0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 ⑧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고창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고창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 대상이 된다.</p> <p>1. <u>입국 이후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고창군에 자녀를 출생신고</u> 2. <u>출산장려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u></p>

제4조(지원내용) ①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넷째 아이 7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부터 1,000만원으로 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출생 시 50%, 1년 후에 50%로 2회 분할 지원한다. 다만, 1년 후 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을 신청

제4조(지원내용) ①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750만원, 넷째 아이 1,0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한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조례 제 2745 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사무과장)”을 “(사무과장 및 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사무과 또는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과장) ① ~ ③ (생략)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u>위원회</u> 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 ③ (생략)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u>사무과</u> 또 <u>는 위원회</u> -----. ② · ③ (현행과 같음)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규칙 제 1227 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2.15>

사무분장표(제3조관련)

구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신항리영리관리팀	1. 과 업무 통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사무	
	신항리영리관리팀	2. 실업대책 통합기획	
	신항리영리관리팀	3. 노동업무 및 노동조합 건치육성	
	신항리영리관리팀	4. 기업소개소 지도·감독	
	신항리영리관리팀	5. 공공근로사업 추진	
	신항리영리관리팀	6. 청년취업2000사업	
	신항리영리관리팀	7. 일자리지원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신항리영리관리팀	8. 일자리공시제,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신항리영리관리팀	9.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신항리영리관리팀	10.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11. 마을기업, 마을공방, 마을공동체 사업	
	신항리영리관리팀	12. 청년정책 관련업무 전반	
	신항리영리관리팀	13. 창업 관련업무 전반	
	신항리영리관리팀	14. 관내 기업의 애로해소대책 수립	
	신항리영리관리팀	15. 관내 기업체 산업인력 수급 대책 강구	
	신항리영리관리팀	16.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신항리영리관리팀	17.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항리영리관리팀	18. 투자유치 활성화 통합대책 수립	
	신항리영리관리팀	19. 국내외 기업 유치	
	신항리영리관리팀	20. 산업단지내 기업 유치	
	신항리영리관리팀	21. 농공단지 시설 유지 관리	
	신항리영리관리팀	22. 농공단지 입주 계약	
	신항리영리관리팀	23.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신항리영리관리팀	24.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완료신고 처리	
	신항리영리관리팀	25. 공장설립 승인 및 완료신고 처리	
	신항리영리관리팀	26. 이전기업 지원 및 관리	
	신항리영리관리팀	27.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신항리영리관리팀	28. 기업유치관련 집단민원 처리	
	신항리영리관리팀	29.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신항리영리관리팀	30.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신항리영리관리팀	31. 출가관리	
	신항리영리관리팀	32.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33. 통신 방문판매업 관련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34. 공산물, 원산지, 위조상품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35. 대부업, 부권업 관련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36. 담배소매업 관련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37. 과학기술 진흥육성에 관한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38. 시장시설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사업	
	신항리영리관리팀	39. 전통시장 관리 및 지원	
	신항리영리관리팀	40. 상인회 및 대규모 점포에 관한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4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42. BUY 전북 관련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43. 부동부 제조업체 파악 및 등록추진	
	신항리영리관리팀	44. 액화석유가스 인·허가 및 관리	
	신항리영리관리팀	45. 고압가스 인·허가 및 관리	
	신항리영리관리팀	46.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관리	
	신항리영리관리팀	47.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및 관리	
	신항리영리관리팀	48. 계량기 검사 및 관리	
	신항리영리관리팀	49. 신·재생에너지 관련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50. 지역에너지 관련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51. 열관리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52. 전기일반	
	신항리영리관리팀	53. 산업단 제조업 관리 및 지원 업무	
	신항리영리관리팀	54. 농어촌 전기공급 관련업무	

부서	부서명	일사부	비고
	신원지정리사무소	55. 광업권 설정 공익협의 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56.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57. 사후환경 영향평가 실시(개발중, 개발후)	
	신원지정리사무소	58. 산업단지 관련 국가예산 발굴 및 예산 확보	
	신원지정리사무소	59. 산업단지 개발계획 관련 중앙부처, 도청 및 유관기관 협의 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60. 산업단지 내 영농보상 협의 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61. 산업단지 관련 주민 동향 및 민원해결 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62. 산업단지 단제별 준공, 정산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63.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64. 산업단지 전용 진입도로 개설 사업·공사 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65. 산업단지 분쟁 관련 행정심판, 소송 등 송사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66. 부후자투와농공단지 시설유지 관리	
	신원지정리사무소	67. 부후자투와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분양업무	
	신원지정리사무소	68. 노후대교 건설	
	신원지정리사무소	69. 연제 교동방 두축	
	신원지정리사무소	70. 천덕에너지 4차산업클러스터조성	
	신원지정리사무소	71. 생태복합관광지조성(심원열천)	
	신원지정리사무소	72. 노후권맛대 설치	
	신원지정리사무소	73. 치유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신원지정리사무소	74. 서해안 월드 국가계획반영	
	신원지정리사무소	75. 고향사랑 기부제	
	신원지정리사무소	76. 인구정책	삭제(이관)
	신원지정리사무소	77. 관계인구정책	삭제(이관)
	신원지정리사무소	78. 지역내 총생산	
	행정지원과	1. 분청·리송기관·사업소·읍·면·차고 감독	
	행정지원과	2. 기반행정 운영	
	행정지원과	3.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행정지원과	4. 반상회 운영	
	행정지원과	5. 행정심판 종합평가	
	행정지원과	6. 각종위원회 관리	
	행정지원과	7. 지역여부관리	
	행정지원과	8. 사회봉사명령 집행	
	행정지원과	9. 고창비전다경의날 시부식, 동부식 운영	
	행정지원과	10. 상투회(식당·매점)운영	
	행정지원과	11. 괴장금고 운영	
	행정지원과	12. 기록관 관리	
	행정지원과	13. 행정사 업무처리	
	행정지원과	14. 공익분투 및 폐기·대장처리	
	행정지원과	16. 군수·부군수·과·관·소장·읍·면장 사후안계 인수	
	행정지원과	16. 군 산하 공무원 복부관리	
	행정지원과	17. 당직운영	
	행정지원과	18. 선거 및 주민투표	
	행정지원과	19. 행정두의 개편·광역행정	
	행정지원과	20. 행정서비스현장 총괄지도 감독	
	행정지원과	21.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의	
	행정지원과	22. 군민의정	
	행정지원과	23. 회의실, 상황실운영	
	행정지원과	24.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및 접수 처리	
	행정지원과	25. 과거사 진상조사 및 접수 처리	
	행정지원과	26. 군정시책 발굴 및 추진	
	행정지원과	27. 유관기관장 간담회 운영	
	행정지원과	28. 군 분청 및 산하기관 집부검열	
	행정지원과	29. 개의군민회 및 향우회 관리	
	행정지원과	30. 과과소장, 읍면장 등 각종간부회의(주간, 월중업무 등) 지원	

부서	부서별	일사부	비고
행정지원과	31.	주민과의 대화 운영	
행정지원과	32.	군 산하기관 태극기 관리	
행정지원과	33.	공무원 후생복지	
행정지원과	34.	행정정보공개 접수 창구 운영	
행정지원과	35.	새마을운동고향군지회, 바르게살기고향군협의회등 관련 단체 업무	
행정지원과	36.	적십자 회비수납	
행정지원과	37.	송년 및 새해 맞이 행사(해님이, 해맞이)	
행정지원과	38.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행정지원과	3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총괄	
행정지원과	40.	공무원 임용·경제·소청 업무 전반	
행정지원과	41.	인사(경제)위원회·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행정지원과	42.	공무원 근무명절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행정지원과	43.	공무원 훈·포장·보상	
행정지원과	44.	공무원 교육·훈련	
행정지원과	45.	공무과근로자 채용 및 인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협의	
행정지원과	46.	기부·정원 및 조직관리 업무	
행정지원과	47.	기준인건비제 및 재정영향분석 관리	
행정지원과	48.	가치단체 기부·인력 모델설정 및 등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행정지원과	49.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관리	
행정지원과	50.	공무원 연금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업무 전반	
행정지원과	51.	공무과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행정지원과	52.	4대보험 관리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행정지원과	5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행정지원과	54.	군정홍보계획 수립시행	
행정지원과	55.	홍보자료 수집·제공 촬영	
행정지원과	56.	홍보대개체 발굴·육성	
행정지원과	57.	군보·군정 신문 발간	
행정지원과	58.	국정업무에 관한 홍보	
행정지원과	59.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관련 홍보	
행정지원과	60.	공보·광고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61.	보도자료 게재	
행정지원과	62.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행정지원과	63.	그 밖의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64.	정보통신 융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과	65.	행정통합정보 고도화사업 및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행정지원과	66.	지역정보화추진사업 발굴 및 추진	
행정지원과	67.	정보화 마을조성 운영	
행정지원과	6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	
행정지원과	69.	전자문서, 문서유동시스템 운영 관리	
행정지원과	70.	행정전자서명 운영 관리	
행정지원과	71.	인터넷 홈페이지, 웹메일시스템 운영	
행정지원과	72.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	
행정지원과	73.	행정재산감비 및 업무용 S/W 보급관리	
행정지원과	74.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행정지원과	75.	부서별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및 지원	
행정지원과	76.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문서사부 처리	
행정지원과	77.	복합유희시설 및 유희행사용 방송기기 관리 및 운영	
행정지원과	78.	정보통신융합망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79.	행정정보통신시설 및 회선 유지관리	
행정지원과	80.	행정 및 지역초고속망 구축확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81.	정보통신 민원사부처리	
행정지원과	82.	TV난시청 해소 관련 업무 공개	
행정지원과	83.	군정 홍보를 위한 저광판 운영	
행정지원과	84.	교환실 및 데스크 운영	

부서	부서명	팀 사부	비고
	행정지원과	85.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	
	행정지원과	86. 공공데이터 발달, 개방, 품질관리	
	행정지원과	87.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관리	
	행정지원과	88.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관리	
	행정지원과	89. 영상정보처리 통합과제센터 운영	
	행정지원과	90. CCTV설치 및 유지보수	
	행정지원과	91. 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행정지원과	92. 인구정책	이관
	행정지원과	93. 관계인구 정책	이관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 과 업무 통합기획, 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사무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 산림기본계획수립 추진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 산림기본통계 및 입산통 생산통계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4. 공유림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5.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사업신고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6. 임목 벌채 허가 및 신고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7. 조림사업(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경관조림, 유휴토지)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8. 조림지 가꾸기 사업(덩굴제거, 톱베기)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9.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0. 정책숲가꾸기(속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1. 공동산림가꾸기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2. 임도시설(신설, 구조개량, 보수) 및 유지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3. 농림사업 및 산림소득사업 지원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4. 산림조합 육성 및 지도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5. 새둥지 관리 및 양묘 생산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6. 입산통 품질관리 및 유동구조개선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7. 입업단체 및 입업인 육성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8.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19.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사건처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0. 산불 방지 예방 및 단속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1. 산불방지 인력 및 진화장비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2. 산지이용구분 조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3. 보전 산지 지정 및 해제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4.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사업허가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5. 산림내 트사·석 채취허가 및 훼손지 복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6. 산림병충해 및 소나무 재선충 방제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7. 입산통 관리(채취) 허가 및 신고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8. 사방사업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29. 산불 진화차량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0. 선유산 생태숲 조성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1. 산림경영모형숲 조성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2. 화단조성 및 관리(회전교차로 포함)	수정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3. 꽃길조성 및 관리(올덴 도로변 꽃길조성 포함)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4. 가르수 조성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5. 1읍·면 1산 가꾸기사업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6. 등산로 설치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7. 숲길 조성사업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8. 보호수 노거수 외과수술 등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39.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40.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41. 산림욕장 등의 조성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42. 수목원 조성 및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43. 공공시설내 수목 정절 및 수목관리 기술지도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44. 서해안 바람공원 관리	
농업농산업과	산림공원과	45.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부서	부서명	팀사부	비고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46. 녹색농업기술원 조성 및 관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47. 녹색자립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48. 선운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49.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0. 탐방객 입서 및 안전지도, 사용료 징수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1. 선운산도립공원내의 업무 지도·단속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2. 일엽산림공익피해지불제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3.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및 관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4. 분수산 권택 치유의 숲 관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5. 온경수산업 육성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6. 도시숲육의 조성 및 관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7. 생활숲육의 조성 및 관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8. 일특목기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59. 산림사업법인관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60. 일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61.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62. 도시공원 조성 및 계획 변경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63.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 과 업무 통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3. 절도구역 관리(도시계획구역 제외)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4. 도로 관리(건설장비관리·도로보수원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5. 도로유지관리 (비예산 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6. 도로표지판 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7.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8. 정각도로 교통량 조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9. 건설관련 국·공유행정재산 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0. 국·지방도(미분용지)보상 및 이전등기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1. 제한차량 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3. 국유재산 권리보전 (건설교통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4. 전문건설업 관리 및 중부 신고수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5. 운외광고를 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6. 도로점용 신고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사후 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7. 사도개설 허가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8.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19. 경지정리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0.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1. 개간 허가 및 지도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2. 각종 농지개발사업의 집행감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3. 한해대책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4.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5. 관련업무 국·공유행정재산 관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6. 방기반정비사업 집행감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8. 대·소형관정 개발사업 집행감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29. 양·배수장 집행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30. 소규모 유지관리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31. 배수개선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32. 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33. 오지개발 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34. 경지정리 지구내 농토면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35.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36.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구분	부서	번호	명사부	비고
농업	건설도시과	37	심원지구 조성토지 매각대금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38	농업기반시설 등복합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39	군도 및 농어촌도로 증강기 계획 수립	
농업	건설도시과	40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	
농업	건설도시과	4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통사고 감소권 개선사업추진	
농업	건설도시과	42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사업 추진	
농업	건설도시과	43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량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추진	
농업	건설도시과	44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용지보상 및 이전 중기	
농업	건설도시과	46	도로구역 결정고시	
농업	건설도시과	46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관리점사업 협의 및 허가	
농업	건설도시과	47	타기과 시행사업(도로)업무협의 및 추진	
농업	건설도시과	48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농업	건설도시과	49	국토 및 도시 통합계획 수립.시행	
농업	건설도시과	5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개정비	
농업	건설도시과	51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결정	
농업	건설도시과	52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결정과 변경결정	
농업	건설도시과	5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도	
농업	건설도시과	54	도시통계	
농업	건설도시과	55	도시계획 법령 및 구획 등에 관한 사항	
농업	건설도시과	56	도시가르단 정비(도시계획도로 및 길기미집행대수철구)	
농업	건설도시과	57	자전거도로 정비	
농업	건설도시과	58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수립 및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59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농업	건설도시과	60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농업	건설도시과	6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	건설도시과	62	소도읍 육성사업(관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포함)	
농업	건설도시과	63	수동지역 및 시변지역 개발사업	
농업	건설도시과	64	읍면복지회관-모텔 등 공동시설을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65	비밀정도로 시설 및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66	농로개설사업 추진 및 관리(경지정리지구 외)	
농업	건설도시과	67	마을 진입로 및 안길 덧씌우기사업 추진	
농업	건설도시과	68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농업	건설도시과	69	소규모시설관리 및 수해복구 추진 등 지역개발 업무 전반	
농업	건설도시과	70	경관계획 수립 및 운영	
농업	건설도시과	7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농업	건설도시과	7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농업	건설도시과	73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농업	건설도시과	74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	
농업	건설도시과	7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업	건설도시과	76	택시 전반	
농업	건설도시과	77	버스 전반(대중.전세)	
농업	건설도시과	78	화물 전반	
농업	건설도시과	79	자전거 정비, 배대, 폐차업	
농업	건설도시과	80	자전거를 관리 업무	
농업	건설도시과	81	역객터미널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82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83	가르릉 설치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84	공개업, 주선업	
농업	건설도시과	85	부담방치 차량 관리	
농업	건설도시과	86	교통질서 확립	
농업	건설도시과	87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각종 사업관련 주차장설치 제외)	
농업	건설도시과	88	유가보조금 지급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규칙 제 1228 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탁운영) ① ~ ⑤ (생략) <신 설></p> <p>제11조(위원회 설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는 <u>추모의집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u></p> <p>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u>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u> ③ <u>위원은 관계공무원·군의회의원·장묘문화개선 관련단체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u></p> <p>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u>추모</u></p>	<p>제10조(위탁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u> <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추모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
- 2.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3. 수탁자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추모의집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② 위원 중 고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의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결원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사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 (생략)

제1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고창군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3일

고창군 규칙 제 1229 호

고창군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7월에서 10월까지 말하고,”를 “4월에서 6월까지, 9월에서 11월까지를 말하고”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성수기”란 1년 중 <u>7월에서 10월까지</u>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p> <p>3.·4. (생 략)</p> <p>제15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생 략)</p> <p>② <u>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4월에서 6월까지, 9월에서 11월까지</u>를 말하고 -----.</p> <p>3.·4. (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u></p>

[별표 2] 현 행

□ 사용료 반환 기준(제15조 관련)

구분	내용	반환기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90%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80% 환급
	사용 당일 취소	70% 환급
관리자의 사정 또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비고

-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 개정 안

□ 사용료 반환 기준(제15조 관련)

구분	내용	반환기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80%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70% 환급
	사용 당일 취소	50% 환급
관리자의 사정 또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비고

-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1-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숙박업 (2-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p>2) 성수기 주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p>3) 비수기 주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p>4) 비수기 주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숙박업 (3-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p>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p> <p>-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p> <p>- 이용이 불가한 경우</p>	<p>o 계약금 환급</p> <p>o 계약금 환급</p>	<p>*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p>
<p>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p>	<p>o 계약금 환급</p>	
<p>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p> <p>-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p> <p>· 계약내용 변경 시</p> <p>· 계약해제 시</p> <p>-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p> <p>· 계약내용 변경 시</p> <p>· 계약해제 시</p>	<p>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p> <p>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p> <p>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p> <p>o 위약금 50% 감경</p>	<p>*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p> <p>*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p> <p>*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p>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2023.9.22.)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일

고창군의회 규칙 제1224호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사팀과 홍보팀**”을 “**의사홍보팀과 정책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팀**”을 “**의사홍보팀**”으로 하며, 같
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회 홍보계획 수립
6.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7. 의회 간행물(의정백서·안내책자),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
항
8. 홈페이지 관리
9.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팀**”을 “**정책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
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

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성명서, 건의·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회사무과) ① 사무과에 의정팀, <u>의사팀과 홍보팀</u>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u>의사팀</u>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④ <u>홍보팀</u>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의회 홍보계획 수립</u></p> <p>2. <u>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u></p> <p>3. <u>의회 간행물(의정백서·안내책</u></p>	<p>제2조(의회사무과) ① ----- <u>의사홍보팀과 정책지원팀</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의사홍보팀</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의회 홍보계획 수립</u></p> <p>6. <u>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u></p> <p>7. <u>의회 간행물(의정백서·안내책자),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홈페이지 관리</u></p> <p>9. <u>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u></p> <p>④ <u>정책지원팀</u>----- -.</p> <p>1. <u>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u></p> <p>2. <u>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u></p> <p>3. <u>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u></p>

자),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관리

5.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3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7. (생략)

8. 정책지원관 관리 및 분장업무 검토

9. (생략)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성명서, 건의·결의문, 5분 자유 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8. (현행 제9호와 같음)

제4조(정책지원관) <삭 제>

-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6. 성명서, 건의·결의문, 5분 자유 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2023.9.22.)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일

고창군의회 규칙 제1225호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의 원:”을 “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10조제2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규칙은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제10조제2항----- ----- ----- ----- -----.</p>
<p>제5조(대상사무) 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u>의원</u>: 별표 3</p> <p>4. <u>사무과장</u>: 별표 4</p> <p>②·③ (생략)</p>	<p>제5조(대상사무)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사무과장</u>: --</p> <p><삭제></p> <p>②·③ (현행과 같음)</p>

[별표 1]

의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부서별	구분	세부업무	전결		결재 의장
			팀장	사무과장	
의 회 사무과	1. 집회관련	가. 집회요구서 접수 및 집회공고			○
		나. 집회공고문 게시	○		
	2. 의원관련	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처리			○
		나. 장기 결석의원 출석 요구			○
		다. 의원 사직의 허가(폐회 중) 및 통지			○
		라. 의원 재산등록 신고			○
		마.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			○
	3. 의원교류	가. 의원교류 체결 계획			○
		나. 자매도시 교류 운영			○
	4. 의원청원	가.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			○
	5. 의원간담회	가. 간담회 소집 (정기, 수시)			○
		나. 간담회 자료 작성		○	
		다. 간담회 결과 정리 등 업무처리		○	
	6. 진정서	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
		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			○
	7. 행사	가. 전체 의원 단위 중요행사			○
		나. 그 밖의 일반행사		○	
	8. 의회 운영 일정	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조정			○
		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통보		○	
	9. 의사진행	가. 회기운영 종합계획 수립			○
		나. 의사일정 작성, 협의			○
		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경유
		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
		마. 본회의장 의사 진행 관련 문건 작성			○
		바. 5분 자유발언 허가			○
		사. 투표 및 표결			○
	10. 안건처리	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
		나. 의안처리결과 이송			○
		다. 의안관리		○	

부서별	구 분	세 부 업 무	전결		결재
			팀장	사무과장	의장
	11. 군정질문 서면질문	가. 질문요지서 접수·처리			○
		나. 출석요구 통지			○
		다. 질문요지서 이송			○
		라. 서면답변서 자료 배부		○	
	12. 정책지원	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지원		○	
		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다.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취합·분석·지원		○	
		라.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등 지원		○	
		마. 의원의 성명서, 건의 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	
	13. 자료요구	가. 의원 요구자료 접수 및 처리(폐회 중 또는 본회의 개의중)			○
	14. 결산검사 위원	가. 결산검사위원 위촉			○
	15. 입법 및 법률고문	가.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
	16. 의정백서	가. 의정백서 발간			○
	17. 회의록	가. 회의록 발간			○
		나. 회의록 자구 정정			○
		다. 비공개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
	18. 본회의장 관리운영	가. 방청 허가			○
		나. 방청권 교부 및 안내		○	
		다. 회의장 관리 및 질서 유지			○
		라. 경호권 발동			○
	19. 인사	가. 공무원 전출입 동의 및 인사교류			○
		나. 공무원 임용			○
		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마. 성과상여금			○
		바. 대우공무원 선발		○	
		사. 근속승진(7급이하),우대승진		○	
		아. 공무원 시험요구 및 실시			○
		자. 공무원 징계처분			○
		차. 조직관리			

부서별	구 분	세 부 업 무	전결		결재
			팀장	사무과장	의장
	20. 복무	1) 행정기구설치			○
		2) 사무분장		○	
		카.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 개최요구		○	
		2) 인사위원회 개최		○	
		3)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타. 직원 포상			○
		파. 사무인계.인수서 처리		○	
		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1) 사무과장		○	
		2) 전문위원		○	
		3) 6급 이하		○	
		나. 공무국외출장			
		1) 의원			○
		2) 직원		○	
	다. 휴가·병가				
	1) 사무과장		○		
	2) 전문위원, 6급 이하		○		
	라. 초과근무명령 및 내역 결과보고		○		
	마.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		
	21. 예산·회계	가. 예산편성방침 결정			○
		나.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다.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라. 예산배정 요구		○	
		마. 예산의 이·전용 이월요구		○	
		바.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사. 사무과 예산지출 관련 방침		○	
		아. 예산 품의 및 집행		○	
		자. 세출 결산		○	

[별표 2]

위원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부서별	구분	세부업무	전결	결재	결재 (경유, 보고)	
			전문 위원	위원장	의장	
전문위원	1. 의안처리	가. 의장의 회부의안 접수		○		
		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위원회 개최 중)		○	보고	
		다. 의안의 검토보고 작성		○		
		라. 의안의 심사결과보고 작성		○		
		마. 의안의 본회의 상정 의뢰		○		
		바.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		○		
		사.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			
	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관리			○	
		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경유
		다.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	○			
		라.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			○	
	3. 회의진행	가. 위원회 의사진행			○	
		나. 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	
	4. 특별위원회 운영	가. 특별위원회 운영			○	
		나.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및 운영				
		1) 의사일정 관리			○	
		2)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경유
		3) 자료의 보존 및 관리	○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운영	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	
		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	경유
		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라. 관계인의 출석 요구			○	경유
		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 통보			○	경유
	6. 청원처리	가. 청원심사결과보고서안 작성	○			
		나.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부서별	구분	세부업무	전결	결재	결재 (경유, 보고)
			전문 위원	위원장	의장
	7. 진정서처리	가. 진정서 처리방향 결정		○	
	8. 요구자료 접수처리	가. 의안심의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		○	
		나. 일반자료	○		
	9. 의정활동	가. 의사일정 협의		○	
		나.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	
		다. 현장방문 계획 수립			○
		라. 현장방문 결과통지			경유
		마. 현장방문 추진		○	
		바. 위원회 비교견학 추진		○	
	10. 정책지원	가.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나.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연구		○	
		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별표 3]

사무과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제5조제1항제3호 관련)

부서별	구분	세부업무	전결	결재	보고	
			팀장	사무과장	의장	
의회 사무과	1. 문서	가. 중요사항 접수(의회운영 관련)		○	보고	
		나. 일반사항		○		
		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		
		라. 유관기관 자료제출		○		
	2. 의원관련 일반사항	가. 의원 등록 및 신상관리				
		1) 의원 기록 카드 작성 및 관리		○		
		2) 의원의 병역사항 신고의무		○		
		3) 의원 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		
	3. 홍보 및 보도자료	가. 의정홍보 및 광고일반			○	
		나.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			
	4. 의회 홈페이지	가. 운영계획(변경) 수립			○	보고
		나. 운영 및 유지보수			○	
	5. 공인관리	가. 공인신조			○	보고
		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			○	
		다. 공인관리	○			
	6. 보안	가. 보안점검일지		○		
		나.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다.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라.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			○	
	7.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차량운행일지			○	
	8. 정보공개	가. 문서접수 및 정보 공개 결정			○	보고
	9. 청사시설	가. 청사방호			○	보고
		나. 음향시설 및 방송 장비 관리 및 운영			○	
		다. 회의실 관리 및 운영	○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2023.9.22.)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일

고창군의회 규칙 제1226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작성요령, [별표5]의 비고1, [별표6]의 비고4,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p> <p>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p>
<p>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생략)</p>	<p>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현행 제1항과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시표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비고 :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개정 2023. 6. 8.>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정 비	<p>산업기사 : 항공</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지 적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측 지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도시교통 설 계	<p>산업기사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능장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통신기술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전송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 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조리	조리	<p>기능장 : 조리</p> <p>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p>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위생	사역	<p>기능사 : 환경기능사</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이상병리사(12) 법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관리기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반사성동위원소취급사(특수) 반사성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이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법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반사성동위원소취급사(일반)(3) 반사성독자(3) 임상심리사1급(3)	이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법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반사성동위원소취급사(일반) 반사성독자(1급)(3) 임상심리사2급(3)	이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법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이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법사선사 물리치료사 관리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청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청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청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청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청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 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2] <개정 2023. 6. 8.>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1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공 업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 기술비율 적용: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p>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 가산</p> <p>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녹 지	산림자원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p>기사자격증 가산</p> <p>비율 적용 : 나무의사</p>
	산림보호	<p>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p> <p>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p> <p>기능사 : 산림</p>	<p>기사자격증 가산</p> <p>비율 적용 : 나무의사</p>
	산림이용	<p>기술사 : 산림</p> <p>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p>	
	조 경	<p>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p> <p>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p> <p>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p> <p>기능사 : 조경, 산림</p>	<p>기사자격증 가산</p> <p>비율 적용 : 나무의사</p>

해양수산	일반해양	<p>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p>	
	일반수산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p>
	어 로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해양교통 시 설	<p>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p>	
보 건	보 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보 건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의공</p> <p>산업기사: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화학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농촌지도	농업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근층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 경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의 회 의 장

2023년 9월 일

고창군 훈령 제 6 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2항 중 “**의사팀장**”을 “**의사홍보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u>의사팀장</u>이 된다.</p> <p>③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의사홍보팀장</u>-----.</p> <p>③ (현행과 같음)</p>

고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10월 11일

고창군 예규 제15호

고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음성의 녹음
 -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헐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하여야 한다.
3. 군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읍장·면장)
2.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주무팀장(부읍장·부면장)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고·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고·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고·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 관리책임자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고창군 내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영상기록(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2. [별지 제2호서식] 휴대용 영상기록(음성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3. [별지 제3호서식] 휴대용 영상기록(음성기록) 장비 등록대장

고창군 고시 제2023-148호

성송면 내원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 신림면 범지마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성송면 내원마을 마을만들기사업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총사업비 : 500백만원(군비)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일원
- 면 적 : 64ha
- 가구·인구 : 가구 20호, 인구 39명

- 기초생활기반 : 힐링 내원 광장 조성, 내원 마을길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역량강화 : 마을특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22. 1. ~ 2024. 12.
7. 기본계획 열람 장소 : 농촌활력과 (☎ 063-560-2708)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31)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입

〈단위:천원〉

과 목	시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00,000	75,000	150,000	275,000
군 비	500,000	75,000	150,000	275,000
기 타	-	-	-	-

■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증감	비고
합 계		500,000	500,000	-	
기초 생활 기반	소 계	350,000	290,218	감 59,782	
	힐링 내원 광장	180,000	192,876	증 12,876	
	내원 마을길 조성	170,000	25,962	감 144,038	-
	마을회관 리모델링	0	28,505	증 28,505	-
	관급자재대	0	42,875	증 42,875	-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75,000	75,000	-	
	마을특화 프로그램	25,000	25,000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25,000	25,000	-	
	마을공동체 활성화	25,000	25,000	-	
	소 계	75,000	134,782	증 59,782	
부대 비용	기본계획	13,000	12,004	감 996	
	세부설계	16,000	14,024	감 1,976	
	공사감리비	35,000	21,473	감 13,527	
	사업관리비	7,000	4,424	감 2,576	
	잡지출(보상비 포함)	4,000	82,857	증 78,857	

고창군 고시 제2023-149호

아산면 마명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 신림면 범지마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아산면 마명마을 마을만들기사업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총사업비 : 500백만원(군비)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일원
- 면 적 : 31ha
- 가구·인구 : 가구 36호, 인구 89명

○ 기초생활기반 :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인회관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마을특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22. 1. ~ 2024. 12.

7. 기본계획 열람 장소 : 농촌활력과 (☎ 063-560-2708)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31)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천원>

과 목	시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00,000	75,000	150,000	275,000
군 비	500,000	75,000	150,000	275,000
기 타	-	-	-	-

■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증감	비고
합 계		500,000	500,000	-	
기초 생활 기반	소 계	355,000	357,391	증 2,391	
	마을회관 리모델링	130,000	97,786	감 32,214	
	노인회관 리모델링 노인회관 주변정비	128,600	79,392	감 49,208	-
	마을 진입로 정비	96,400	74,435	감 21,965	-
	관급자재대	0	105,778	증 105,778	-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75,000	75,000	-
	마을특화 프로그램	25,000	25,000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25,000	25,000	-	
	마을공동체 활성화	25,000	25,000	-	
	소 계	70,000	67,609	감 2,391	
부대 비용	기본계획	12,000	12,004	증 4	
	세부설계	15,000	15,711	증 711	
	공사감리비	34,000	26,804	감 7,196	
	사업관리비	6,000	5,523	감 477	
	잡지출	3,000	7,567	증 4,567	

고창군 고시 제2023-150호

신림면 신기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 신림면 범지마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신림면 신기마을 마을만들기사업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총사업비 : 500백만원(군비)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일원
- 면 적 : 23ha
- 가구·인구 : 가구 46호, 인구 78명
- 기초생활기반 : 경로당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지역 돌담정비

○ 지역역량강화 : 마을특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22. 1. ~ 2024. 12.

7. 기본계획 열람 장소 : 농촌활력과 (☎ 063-560-2708)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31)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천원〉

과 목	시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00,000	75,000	150,000	275,000
군 비	500,000	75,000	150,000	275,000
기 타	-	-	-	-

■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증감	비고
합 계		500,000	500,000	-	
기초 생활 기반	소 계	222,400	47,320	감 175,080	
	경로당 리모델링	164,700	47,320	감 117,380	
	마을회관 광장정비	32,960	0	감 32,960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24,740	0	감 24,740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132,600	262,280	증 129,680	
	돌담정비	132,600	262,280	증 129,680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75,000	75,000	-	
	마을특화 프로그램	25,000	25,000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25,000	25,000	-	
	마을공동체 활성화	25,000	25,000	-	
	소 계	70,000	115,400	증 45,400	
부대 비용	기본계획	12,000	12,004	증 4	
	세부설계	15,000	16,495	증 1,495	
	공사감리비	35,000	23,220	감 11,780	
	사업관리비	7,000	4,784	감 2,216	
	잡지출	1,000	58,897	증 57,897	

고창군 고시 제2023-151호

무장면 조치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 신림면 범지마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무장면 조치마을 마을만들기사업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총사업비 : 500백만원(군비)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일원
- 면 적 : 72ha
- 가구·인구 : 가구 31호, 인구 59명
- 기초생활기반 : 주민공유공간 신축, 조치제치유길

○ 지역역량강화 : 마을특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22. 1. ~ 2024. 12.

7. 기본계획 열람 장소 : 농촌활력과 (☎ 063-560-2708)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31)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천원〉

과 목	시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00,000	75,000	150,000	275,000
군 비	500,000	75,000	150,000	275,000
기 타	-	-	-	-

■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증감	비고
합 계		500,000	500,000	-	
기초 생활 기반	소 계	350,000	337,537	감 12,463	
	주민공유공간	280,000	337,537	증 57,537	
	조치제치유길	70,000	0	감 70,000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75,000	75,000	-	
	마을특화 프로그램	25,000	25,000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25,000	25,000	-	
	마을공동체 활성화	25,000	25,000	-	
	소 계	70,000	115,400	증 12,463	
부대 비용	기본계획	12,000	12,004	감 996	
	세부설계	15,000	16,495	증 650	
	공사감리비	35,000	23,220	감 9,685	
	사업관리비	7,000	4,784	감 1,784	
	잡지출	1,000	58,897	증 24,278	

고창군 고시 제 2023-152 호

경지정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구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토지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토지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 시행하였기에 지적업무처리규정 제 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17. (7일간)

2.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가.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사업명	토지 소재지	폐쇄(종전지번)		토지소재지	작성(확정)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구	고수면 황산리	21	18,448.00	고수면 황산리	1	18,502.40

3. 지적공부 열람장소 :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사무실내

4. 전화문의

토지개발사업 완료신고에 따라 작성된 지적공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전화 : 560 - 2417)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공고 제2023-1824호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족의 유형별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의 기능(안 제3조)
- 나. 시설 및 조직(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운영위원회 운영 및 수당(안 제6조, 안 제7조)
- 라.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안 제8조 ~ 안 제10조)
- 마. 지원(안 제11조)

바. 지도·점검(안 제12조)

사. 주민참여(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7일까지 고창군수(참조 : 인재양성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 1) 전자우편 : nannaya87@korea.kr
- 2) 주 소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 3) F A X : 063-560-289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여성정책팀(☎063-560-2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고창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창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고창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고창군 가족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
3.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고창군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원) ①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고창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고창군 공고 제2023-1836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고창군에서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은 하고 있지만 주소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입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시책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원 기준 및 내용(안 제2조)

- 전입 세대원 지원 : 생활지원금 15만원
- 전입학생 : 최초학기 20만원, 이후 학년당 10만원 지급
- 전입군인 : 생활지원금 20만원
-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
 -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 200만원

나.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3조)

다. 환수조치(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622 고창군 중앙로 245

-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063-560-2309, Fax 063-560-23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 (☎560-23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10.
제 출 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

1. 제정이유

- 고창군에서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은 하고 있지만 주소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입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시책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원 기준 및 내용(안 제2조)

- 전입 세대원 지원 : 생활지원금 15만원
- 전입학생 : 최초학기 20만원, 이후 학년당 10만원 지급
- 전입군인 : 생활지원금 20만원
-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
 -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 200만원

나.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3조)

다. 환수조치(안 제4조)

3. 참고사항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4. 따로붙임

- 제정 규칙안 1부

고창군 규칙 제 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및 내용) ①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인구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원 내용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 세부 기준(제2조 관련)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지 원 기 준	
전입 세대원지원	◦ 생활지원금 15만원 / 1인	-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전입 학생	◦ 최초학기 20만원, ◦ 이후 학년당 10만원 지급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군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입 군인	◦ 생활지원금 20만원/1인	-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유공기관· 단체·기업 체 지원금	◦ 유공 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	- 전입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입자 인원임 -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전 입 실 적		지 원 액
	5명 이상 ~ 10명 미만		50만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100만원
20명 이상 ~	200만원		

※ 지원대상별 지원 자격, 지원 방법 및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23-1850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융자한도 및 이율에서 융자한도 5천만원 이내 추가(안 제10조제1항)
- 나.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에서 융자한도 5천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상환 추가(안 제11조)
- 다. 이차보전 지원에서 융자한도 5천만원 이내 연 3% 추가(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 (참조 : 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 (전화 : 063-560-2351 FAX : 063-560-236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
담당자 김희정(전화:063-560-2351)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 이내”를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1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년”을 “용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1년”으로, “상환”을 “상환, 5천만원 이내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연 5%”를 “용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연 5%, 5천만원 이내는 연3%”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u>3천만원 이내</u>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 <u>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내</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u>1년</u> 거치 2년 <u>상환</u>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 <u>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1년</u> ----- <u>상환</u>, <u>5천만원 이내는 1년 거치 4년 상환</u>-----.</p>
<p>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② (생략)</p> <p>③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u>연 5%</u>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p> <p>④ (생략)</p>	<p>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연 5%</u>, <u>5천만원 이내는 연3%</u>-----.</p> <p>④ (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10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고 창 군 수 귀 하			

고창군 공고 제2023 - 1870호

<h2 style="margin: 0;">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h2>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청소년수련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선발 예정 인원

근무부서	채용예정 등 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범 위	비 고
인재양성과	기간제 근로자	1명	2023. 11. 1 ~2023. 12. 31	수영장 매표소 근무 및 수련시설 업무 보조	
인재양성과	기간제 근로자	1명	2023. 11. 1 ~2023. 12. 31	열린공간시설 운영 및 이용자지도(기상현실 스포츠실) 등	

※ 시설관리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고창군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수련시설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제외)
-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나. 응시연령

구 분	연 령	비 고
기간제 근로자 (수영장 매표소 및 열린공간)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3. 근거 법령

- 고창군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관리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선발 방법 및 선발 원칙

가. 1차 : 서류심사 (응시자격 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생략 가능)

다. 선발원칙

- 공고일 현재 고창군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해당 업무 경험자 우대

5. 보수조건 : 일급 76,960원 (주차수당 지급)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수영장 매표소	월 ~ 금요일 (06:00~09:00, 13:00~18:00)	
열린공간	월,화,금,토 (09:00~18:00), 수 (11:00~20:00)	목,일요일(휴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장 소(접 수 처)	비 고
공고 및 접수	공고 : 2023. 10. 6(금) ~12(목) 접수 : 2023. 10. 11(수) ~12(목)	고창군 홈페이지 게시 인재양성과 접수	
1차 시험(서류전형)	2023. 10. 13.	인재양성과 청소년팀	자격요건심사
2차 시험(면 접)	미 정	개별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요시
합격자 발표	미 정	개별 통보	
채 용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 개별 통보

7.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처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청소년팀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청소년수련관 2층)

나.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 1) 표준이력서 1부.
- 2) 응시원서 1부.
- 3) 자기소개서 1부.
- 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병역사항 및 과거이력 포함) 1부.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8. 유의 사항

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응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처리)

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인재양성과 청소년팀	063-560-2935	

<붙임 1>

표준이력서 양식

성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사 진 (4×5)		
	한자 :		~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		생 (만 세)				
주소							
호주명 및 관계	의						
전화번호	자택 :		E-Mail 주소				
	핸드폰 :						
학력사항	졸업년도		학교명		전공		
	년	월					
					대학	과	
경력사항	회사명		재직기간		부서 및 업무내용		
			~				
자격면허	취득년월일		종류			시행청	
병역	병역구분	필·미필·면제·보충역		복무기간		~ (개월)	
	면제사유	군별		병과		계급	
신체	신장	cm	체중	kg	시력 좌() 우()	신체건강상 특기사항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무지	직위	동거여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10월 일 성명 : (인)							

<붙임 2>

※접수번호	
-------	--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사진부착 (3×4cm) 6개월 이내 촬영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		
			한자		번호		
		현주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력 사 항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 퇴	
				졸업/재학/수료/중 퇴	
				졸업/재학/수료/중 퇴	

경 력 사 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증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차량 소유	1) <input type="checkbox"/> 무
	2) <input type="checkbox"/> 유 (차종:)

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청소년수련관) 채용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지원동기	
업무수행계획 (포부또는자세)	
특기사항	

2023. 10. .

작성자

(인/서명)

※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 자유롭게 작성하되 분량은 반드시 A4 2매 이내로 작성

고창군 공고 제2023 - 1888호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업인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에 맞춰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그 밖에 처우개선 수당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안 제8조제1항에제6호)

3. 의견제출

가.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3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063-560-2271, FAX : 063-560-229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사회복지과(☎ 063-56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각 1부.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처우개선 수당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8조(지원사업)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처우개선 수당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현행과 같음)</p>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3조 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 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창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6. 그 밖에 처우개선 수당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고창군 신탐면 신평리			지 번	48-7
건축주	김형심	생년월일		허가(신고)번호	2021-종합면원실- 신축신고-78
도로길이	22.0 m	도로너비	4.0 m	도로면적	26.0 m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48-7	26.0	2023.09	김형심		
합계	26.0				
작성자 : 직급 건축사 성명 반은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0304-26821대

210mm×297mm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m²)

